

의안번호	2124084
의 퇴 인	한병도의원
회 답 일	2023. 10..
추 계 번호	23D3786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지원을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70억 9,600만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동안 총 582억 4,600만원(연평균 116억 4,9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평균
전북특별자치도 지원	7,096	12,860	12,637	12,793	12,860	58,246	11,649

- 주: 1. 안 제172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의 도의회, 시·군의회 의원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의회의원 정수만큼 증원하되, 2025년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4분의3까지, 2026년에 지방의회의원 정수까지 연차적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가정함
 2. 안 제173조에 따라 증가하는 도의회의원 정수는 총 10명(지역구의원 6명, 비례대표 4명)으로 가정
 3.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4조(규제자유화의 추진)	전북특별자치도는 자치법규로 정하는 규제를 도조례로 5년 이내의 기한을 설정하여 재검토하고, 절차개선 등의 규제 개혁 조치를 하여야 함	의무규정
2	안 제16조(농생명지구 기본계획 수립 특례 등)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농생명산업 관련 정책의 기본방향, 세부 분야별 농생명지구 지정 계획, 농생명지구 활성화 시책 등을 포함한 농생명지구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할 수 있음	재량규정
3	안 제15조, 안 제17조~제25조(농생명산업지구 지정 등)	도지사는 농생명산업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농생명산업지구 내에서는 스마트농업 육성 지원, 진흥사업 지원, 곤충종자보급센터 설치·운영 지원, 반려동물산업 육성 등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4	안 제26조(새만금 농생명용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새만금 농생명용지 협의체를 두며, 협의체에서 새만금 농생명용지의 개발계획, 새만금 농생명용지의 조성토지 등의 공급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함	의무규정

5	안 제27조(국가 식품클러스터에 관한 특례)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조성된 식품전문산업단지는 「연구산업진흥법」에 따라 연구산업진흥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함	의무규정
6	안 제28조(한우 산업 보호·육성)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생산·선발된 유전능력이 우수한 고품질 한우를 대상으로 J-카우를 지정할 수 있으며, J-카우에 대한 육종개량 시험연구와 보호·육성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재량규정
7	안 제29조~제34조(지역특화 라이프 및 디지털 헬스케어산업 육성 특례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북특별자치도 내 지역을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로 선정할 수 있고, 전북특별자치도에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감염병전문병원의 설치, 탄소소재 의료기기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실시 등을 할 수 있음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동물용의약품, 바이오융복합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으며, 국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8	안 제35조~제41조(수소특화단지 등 육성 특례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북특별자치도에 수소특화단지의 지정,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실시 등을 할 수 있음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활성화를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지구, 특성화마을을 지정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9	안 제44조(고령친화·사회서비스 산업복합단지 진흥계획의 수립)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5년마다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복합단지의 입지 선정에 관한 사항, 시설 등의 배치계획, 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고령친화·사회서비스복합단지 진흥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의무규정
10	안 제43조, 안 제45조~제48조(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복합단지의 입지선정 및 개발 특례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북특별자치도 내 지역을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 복합단지의 입지로 선정할 수 있고, 전문교육연구기관을 운영할 수 있음 -전북특별자치도와 연구개발기관 및 출연기관은 공동으로 출연하여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 진흥재단을 설립할 수 있음 -국가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재단 및 복합단지에 입주한 연구개발기관 등에 숙소, 편의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국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생명경제 자원순환실증단지를 조성하고, 시범사업, 연구개발 및 실증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재량규정
11	안 제49조~제51조(사용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및 지원 등)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에 필요한 시책 마련, 전기차용 이차전지 기술개발 시범사업 시행 등을 할 수 있고, 국가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재활용사업자 등은 폐전기·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재활용하기 위한 제품 개선사항을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안할 수 있고,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타당성검토 후 채택 여부를 결정함	재량규정

12	안 제52조~제55조(자율주행자동차의 이용 촉진 특례 등)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자율주행자동차 활용 허가, 새만금 무인이동체 종합실증단지 구축, 차세대 철도기술 특성화 대학 운영·지원 등을 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13	안 제56조~제59조(케이문화융합산업진흥지구 지정 등 특례 등)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케이문화융합산업진흥지구의 지정, 케이문화융합콘텐츠 등의 연구개발, 디지털치유콘텐츠 시범사업 실시 등을 할 수 있으며, 국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14	안 제60조~제68조(이스포츠진흥 특례, 태권도 특구 지정 특례 등)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스포츠대회의 육성, 태권도 특구의 지정, 지역특화 관광사업의 육성, 국제회의산업 육성, 수상레저산업 등의 진흥,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지정 등을 할 수 있으며, 국가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15	안 제70조(친환경 산악관광특구 기본계획)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산악관광특구의 위치, 토지이용 계획 등을 포함한 산악관광특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의무규정
16	안 제69조,안 제71조~제82조(친환경 산악관광특구 지정 등)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친환경 산악관광특구를 지정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실시계획의 수립, 토지 등의 수용·사용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음 -국가 및 전북특별자치도는 산악관광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세·부담금의 감면 등을 할 수 있고, 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17	안 제83조, 제84조(인구감소특별광역지역 지정 특례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북특별자치도를 인구감소특별광역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교부할 수 있음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귀농어·귀촌 청년의 농어촌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18	안 제85조(전북과학기술원 설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고급 과학기술인재 양성 등을 위하여 전북자치도에 전북과학기술원을 설립할 수 있음 -전북과학기술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함	재량규정
19	안 제86조~제98조(국제학교의 설립 등)	-국가·전북특별자치도 등은 국제학교 설립·운영할 수 있음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국제학교를 설립하려는 자에게 공유재산의 무상양여 등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20	안 제99조~제103조(금융전문인력 양성 특례 등)	-금융위원회는 전북자치도내에 있는 대학, 연구기관 등을 금융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전북핀테크육성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해당 지구에 입지한 기업의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대하여 전북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심사하도록 함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전자적 투자조언장치 관련 테스트베드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생명경제 금융산업 발전을 위하여 공제사업을 하는 단체·기관 등을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21	안 제104조~제113조(국가IT창업특구 조성·운영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산업진흥법」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지역에 연구산업진흥단지를 지정하거나 직접 조성하여 지정할 수 있음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국가 IT창업특구를 조성·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국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외국인투자기업의 현금지원의 국가분담비율을 상향할 수 있음	재량규정
22	안 제117조~ 제126조(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례 등)	-국가는 광역교통시설 건설·개량, 환승센터 등의 건설·개량 비용 중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을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하여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음 -국가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운영에 필요한 비용 또는 건설 개량하는 경우 지원하는 비용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국가는 시·군에서 노선버스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 사업에 필요한 인건비·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23	안 제127조~제134조(의료취약지 응급의료 특례 등)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의료취약지를 지정할 수 있음 -국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성장촉진지역에 설립한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24	안 제135조~ 제149조(지역중소기업 지원 특례 등)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국가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혁신도시 외 지역을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국가 및 지자체는 이전공공기관을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25	안 제150조~제153조, 안 제155조~163조(생명경제 녹색도시의 조성 등)	-국가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생명경제 녹색도시로 조성하고, 녹색도시 조성사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환경교육 시범도시를 지정하여 환경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고 국가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26	안 제154조(자연경관영향협의 등에 관한 특례)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자연환경보전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 등이 자연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에 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 둠	의무규정
27	안 제164조~제171조, 안 제174조(자치조직권 특례 등)	-소속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인건비성 총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 운영할 수 있음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도조례로 정하는 사람을 특별승급시킬 수 있음	재량규정
28	안 제172조(도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특례)	-「지방자치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범위 안에서 도의회의원 및 시·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음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도의 경우 5급 이하, 시·군의 경우 6급 이하의 일반직지방공무원 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함	재량규정
29	안 제173조(도의회위원회의 정수 특례)	-「공직선거법」 제22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원 중 시·군의 지역구 도의원 정수는 시·군별로 최소 2명이 되도록 함 -「공직선거법」 제2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원 중 비례대표의원 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산정된 도의원정수의 100분의 20으로 함	의무규정
30	안 제175조(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특례)	-전북특별자치도에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두며, 이에 관한 사항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함	의무규정
31	안 제176조~제185조(통합 지방자치단체 특례 등)	-전북특별자치도 내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경우 추가 지원기간을 20년으로 함 -국가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전북특별자치도에 설치할 수 있음	재량규정
32	안 제186조~제196조(교육지원청 설치 특례 등)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치구가 아닌 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교육지원청을 둘 수 있음 -도지사 등은 각급 학교의 농어촌 유학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4조(규제자유화의 추진)	×	제검토 실시 주기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검토 결과 개혁 조치가 필요한 규제의 수·내용 등을 추정 곤란
2	안 제16조(농생명지구 기본계획 수립 특례 등)	○	—
3	안 제15조, 안 제17조~제25조(농생명산업지구 지정 등)	×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지역·규모 등을 예측하기 어렵고, 농어촌 정비 등 특례의 적용 범위, 국가 지원 금액 등을 추정 곤란
4	안 제26조(새만금 농생명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	○	—
5	안 제27조(국가식품클러스터에 관한 특례)	×	연구산업진흥단지로 간주된 식품전문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은 「연구산업진흥법」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므로, 지원금액 등 추정 곤란
6	안 제28조(한우산업 보호·육성)	×	J-카우 지정에 대한 세부사항, 보호·육성 조치 등을 도조례로 위임하고 있어 지정조건, 지원내용·지원규모 등을 추정 곤란
7	안 제29조~제34조(지역특화 라이프 및 디지털 헬스케어산업 육성 특례 등)	×	보건복지부장관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선정 지역, 연구중심병원 지정 병원 등을 예측하기 어렵고, 원격의료·동물의약품·바이오융복합산업 등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규모 등을 추정 곤란
8	안 제35조~제41조(수소특화단지 등 육성 특례 등)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수소특화단지 지정 지역·규모 등을 예측하기 어렵고, 신재생에너지 시범사업, 신재생에너지 특성화 마을 등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규모 등을 추정 곤란
9	안 제44조(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복합단지 진흥계획의 수립)	○	—
10	안 제43조, 안 제45조~제48조(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복합단지의 입지선정 및 개발 특례 등)	×	보건복지부장관의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복합단지 지정 지역·규모를 예측하기 어렵고, 전문연수기관, 재단 등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규모 등을 추정 곤란

11	안 제49조~제51조 (사용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및 지원 등)	×	사용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촉진사업, 전기차용 이차전지 기술개발 시범사업 등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규모 등을 예측하기 어렵고, 재활용사업자 등이 제안하는 개선의건의 수, 검토비용 등을 추정 곤란
12	안 제52~제55조 (자율주행자동차의 이용촉진 특례 등)	×	자율주행자동차, 새만금 무인이동체 산업, 철도산업 관련 교육기관 등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규모 등을 추정 곤란
13	안 제56조~제59조 (케이문화융합산업 진흥지구 지정 등 특 례 등)	×	케이문화융합산업진흥지구 등의 위치, 규모 등을 예측하기 어렵고, 케이팝문화융합산업, 디지털치유콘텐츠 등에 대한 지원 규모 등을 추정 곤란
14	안 제60조~제68조 (이스포츠 진흥 특례, 태권도 특구 지정 특 례 등)	×	태권도 특구,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등의 위치, 범위, 조성 시설 등을 예측하기 어렵고, 이스포츠대회, 지역특화 관광사업, 국제회의산업 등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규모 등을 추정 곤란
15	안 제70조(친환경 산 악관광특구 기본계 획)	○	-
16	안 제69조,안 제71 조~제82조(친환경 산악관광특구 지정 등)	×	친환경 산악관광특구 지정 대상 지역, 특구 규모 등을 예측하기 어렵고, 자연휴양림 등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규모 등을 추정 곤란
17	안 제83조, 제84조 (인구감소특별광역 지역 지정 특례 등)	×	인구감소특별광역지역에 대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비율 등을 예측하기 어렵고, 농어촌 정착 등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규모 등을 추정 곤란
18	안 제85조(전북과학 기술원 설립)	×	안 제85조제2항에서 전북과학기술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
19	안 제86조~제98조 (국제학교의 설립 등)	×	국제학교의 설립 규모, 설립에 필요한 시설·설비 등을 예측하기 어렵고, 무상양여 대상이 될 공유재산 등을 추정 곤란
20	안 제99조~제103조 (금융전문인력 양성 특례 등)	×	전북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위임하고 있고, 규제 샌드박스 심사 건수, 테스트베드센터 설치규모 등을 추정 곤란
21	안 제104조~제113 조(국가IT창업특구 조성·운영 등)	×	국가 IT창업특구의 조성 규모, 외국인투자기업의 현금지원의 국가분담비율 상향폭 등을 추정 곤란
22	안 제117조~ 제126 조(대도시권 광역교 통관리에 관한 특례 등)	×	복합환승센터 건설 개량을 위해 국가가 지원 가능한 비용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고, 광역교통시설 건설·개량, 환승센터 등의 건설·개량 비용, 시·군버스 운영을 위한 비용 등에 대한 지원 규모 등을 추정 곤란

23	안 제127조~제134조(의료취약지 응급 의료 특례 등)	×	의료취약지 대상 지역의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고, 지방의료원의 운영 비용 지원 규모 등을 추정 곤란
24	안 제135조~ 제149조(지역중소기업 지원 특례 등)	×	전북특별자치도에 이전될 공공기관의 규모 등을 예측하기 어렵고, 국가 및 지자체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시범사업,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규모 등을 추정 곤란
25	안 제150조~제153조, 안 제155조~163조 (생명경제 녹색도시의 조성 등)	×	환경교육 시범도시 지정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로 위임하고 있어 환경교육 시범도시 지정요건, 지정규모 등을 예측하기 어렵고, 국가 및 지자체의 녹색도시 조성사업, 환경교육 시범도시 등에 대한 지원 규모 등 추정 곤란
26	안 제154조(자연경관영향협의 등에 관한 특례)	○	-
27	안 제164조~제171조, 안 제174조(자치조직권 특례 등)	×	정원의 추가 공무원 운영 규모, 특별승급 대상 등을 조례로 정하고 있어 추가 채용 규모·특별승급 규모 등을 추정 곤란
28	안 제172조(도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특례)	○	-
29	안 제173조(도의회의원의 정수 특례)	○	-
30	안 제175조(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특례)	○	-
31	안 제176조~제185조(통합 지방자치단체 특례 등)	×	통합 지방자치단체 설립 여부 등을 예측하기 어렵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종류·규모 등을 추정 곤란
32	안 제186조~제196조(교육지원청 설치 특례 등)	×	교육지원청의 설립 여부, 위치, 분장 사무 등을 예측하기 어렵고,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규모 등을 추정 곤란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안 제16조에 따른 농생명지구 기본계획, 안 제44조에 따른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복합단지 진흥계획, 안 제70조에 따른 친환경 산악관광

특구 기본계획은 2023년 전북특별자치도가 수립한 기본계획 등의 예산 금액을 준용함

- 농생명지구 기본계획,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복합단지 진흥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도록 개정안에 명시되어 있으며, 친환경 산악관광특구 기본계획은 개정안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5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함

□ 안 제26조에 따른 새만금 농생명용지협약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은 2023년 전북특별자치도가 구성·운영 중인 협약체의 예산 금액을 준용함

□ 안 제154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 설치되는 자연경관심의회 관련 비용은 2023년 지방환경관서의 자연경관심의회 검토 수당 예산을 준용하여 추계하며, 추계기간 동안 검토 수당은 변화하지 않는다고 가정함

- 자연경관심의회는 「자연환경보전법」¹⁾에 따라 현재 지방환경관서의 장소속으로 운영되고 있음

□ 안 제172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도의회 및 시·군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의회의원 정수만큼 증원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개정안의 규정대로 도의회에는 5급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시·군의회에는 6급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것으로 함

- 현행법령²⁾은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1)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등)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등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등에 대한 인·허가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개발사업등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등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포함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에서의 개발사업등

가.~다. (생략)

2. 제1호외의 개발사업등으로서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등

②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등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등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은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9조에 따른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생략)

제29조(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28조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이에 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검토·심의를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소속하에 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시·도의 경우 6급 이하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7급 이하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하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개정안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정수만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증원하면, 최대 증원 가능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총 123명(도의회 20명, 시군의회 103명)이고, 123명 전부를 채용한다고 가정
 - － 현 전라북도의회 의원 정수는 총 40명(지역구 36명, 비례대표 4명)으로 개정안에 따라 증원 가능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수는 총 20명이고, 현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원 정수는 총 198명(지역구 173명, 비례대표 25명)으로 개정안에 따라 증원 가능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수는 총 103명임³⁾

[표 2] 개정안에 따라 증원 가능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수

(단위: 명)

구 분	지역구의원	비례대표의원	의원 정수	현행법에 따라 임용 가능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수	개정안에 따라 증원 가능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수
도의회	36	4	40	20	20
시·군의회	173	25	198	95	10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은 2025년에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인원만큼, 2026년에 지방의회의원 정수에 해당하는 인원만큼 연차적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가정

- 2) 「지방자치법」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⑤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1. 시·도의 경우: 6급 이하
 2. 시·군·구의 경우: 7급 이하
 ⑥ 제5항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 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만으로 임명할 수 있다.
- 3) 기초자치의회별로 개정안에 따라 추가 임명가능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수는 다음과 같음: 전주(의원정수 35명) 18명, 익산(의원정수 25명) 13명, 군산(의원정수 23명) 12명, 정읍(의원정수 17명) 9명, 남원(의원정수 16명) 8명, 김제(의원정수 14명) 7명, 완주(의원정수 11명) 6명, 고창(의원정수 10명) 5명, 부안(의원정수 10명) 5명, 임실(의원정수 8명) 4명, 순창(의원정수 8명) 4명, 무주(의원정수 7명) 4명, 진안(의원정수 7명) 4명, 장수(의원정수 7명) 4명

-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근거를 규정한 현행법 제41조가 2022년 처음 시행되면서, 지방의회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임명하도록 하였으므로, 개정안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도 연차적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가정함⁴⁾
-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액은 기본연봉액과 성과연봉액으로 구성되며, 계약기간 동안 매년 성과연봉액에 변동이 발생하나, 현재로서는 지방의회별 각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성과연봉 등급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2023년 연봉액에 국회 예산정책처 전망 공무원임금 평균 상승률을 적용
- 각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늘어남에 따라 업무 공간이 필요하나 기존의 지방의회 청사의 공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가정함
- 안 제173조에 따라 증가하는 도의회의원 정수는 총 10명(지역구의원 6명, 비례대표 4명)으로 가정
 - 개정안에 따라 도의회의원의 지역구 도의원 정수를 시·군별로 최소 2명으로, 비례대표 도의원 정수를 도의원정수의 100분의 20으로 할 경우 지역구 도의원 정소는 6명, 비례대표 도의원 정수는 4명이 추가됨
 - 전북특별자치도의 도의회의원 정수는 현재 40명(지역구 36명, 비례대표 4명)으로, 「공직선거법」 제22조⁵⁾에서 도의원정수를 인구·행정구역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추계기간 동안 조정되지 않는다고 가정

4) 법률 제17893호 부칙(2021.1.12. 전부개정, 2022.1.13. 시행)
제6조(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규모에 관한 특례)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는 경우 그 규모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도입한다.

5) 「공직선거법」 제22조(시·도의회의 의원정수) ① 시·도별 지역구시·도원의 총 정수는 그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시·군(하나의 자치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하며,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국회의원지역구와 행정구역이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행정구역을 말한다)수의 2배수로 하되,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인구가 5만명 미만인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하고, 인구가 5만명 이상인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최소 2명으로 한다.

②, ③ (생략)

④ 비례대표시·도의원정수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지역구시·도의원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다만, 산정된 비례대표시·도의원정수가 3인 미만인 때에는 3인으로 한다.

[표 3] 개정안에 따른 도의회의원 정수 추정

구분		도의회의원 정수		
		현행	개정안	차이
지역구	진주시	12	12	0
	군산시	4	4	0
	완주군	2	2	0
	익산시	4	4	0
	고창군	2	2	0
	부안군	1	2	1
	김제시	2	2	0
	남원시	2	2	0
	정읍시	2	2	0
	진안군	1	2	1
	임실군	1	2	1
	순창군	1	2	1
	장수군	1	2	1
	무주군	1	2	1
	비례대표	4	8	4
합계		40	50	10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안 제173조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시·도의원 의정활동 관련 비용⁶⁾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관련 비용이 발생함

- 시도의원 의정활동비는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고, 월정수당은 공무원 임금 상승률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⁷⁾하며, 기본경비는 인건비성 경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 대비 기본경비 비율(49.2%)⁸⁾을 적용하여 산출
- 자산취득비는 2025년에만 발생하며 1인당 492만원 적용
 - － 안 172조에서 적용한 공무원 1인당 자산취득비와 동일하다고 가정함
- 행정안전부의 자료에 따르면, 도의회의원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자이고 고용 및 산재보험은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관부담금은 월정수당에 요율⁹⁾을 곱하여 산정
 - － 시·도의원의 연령을 모두 60세 미만으로 가정하여 국민연금을 추계기간 동안 계속 납부하는 것으로 가정
- 개정안 제172조에 따라 도의원 1인당 정책지원 전문인력 1명을 두는 것

6)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기관부담금, 기본경비(의정운영공동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역량개발비, 의원정책개발비, 의장협의체 부담금을 포함), 자산취득비

7) 「전라북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의정활동비는 월 120만원이며([별표1]), 월정수당은 2023년에는 월 3,214,240원이고 2024년부터는 2023년 금액에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함([별표6])

8) 행정안전부의 2021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

9)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요율(장기요양보험 포함)을 합쳐 2025년 8.665%, 2026년 8.751%, 2027년 8.839%, 2028년 8.928%, 2030년 9.012%

- 으로 가정하며, 2025년에는 추가되는 도의회의원정수의 절반인 5명을, 2026년에 나머지 5명을 5급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가정
- 안 제175조에 따른 도의회의원 선거구 확정위원회는 2026년 6월에 실시 예정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해 구성·운영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 확정위원회 사례를 참고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 확정위원회 운영비를 준용함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확정위원회는 2025년 15회, 2026년 3회 회의가 개최되었음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¹⁰⁾를 적용함
 - 공포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부칙과 법안 심사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각종 계획 수립(안 제16조, 안 제44조 및 안 제70조)

- 안 제16조에 따른 농생명지구 기본계획, 안 제44조에 따른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복합단지 진흥계획, 안 제70조에 따른 친환경 산악관광특구 기본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하기 위하여 2023년 전북특별자치도가 수립한 전라북도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예산 금액(8,000만원)을 준용하여 추계함
 - 추계의 전제에 따라 3개 계획 모두 5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음
- 개정안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농생명지구 기본계획,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복합단지 진흥계획 및 친환경 산악관광특구 기본계획을

10)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2023년 3월 기준, 단위: %)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소비자물가상승률(CPI)	2.7	2.4	2.1	2.0	2.0	2.0

수립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에 2억 5,200만원으로 추계됨

[표 4] 각종 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농생명지구 기본계획 수립	84	0	0	0	0	84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 복합단지 진흥계획	84	0	0	0	0	84
친환경 산악관광특구 기본계획	84	0	0	0	0	84
합 계	252	0	0	0	0	25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새만금 농생명용지협의체 운영(안 제26조)

- 새만금 농생명용지협의체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하기 위하여 2023년 전북특별자치도의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협의체 운영 예산(500만원)을 준용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추계함
- 개정안에 따라 새만금 농생명용지협의체를 운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500만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2,700만원으로 추계됨

[표 5] 새만금 농생명용지 협의체 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새만금 농생명용지협의체 운영	5	5	5	6	6	2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자연경관심의회 설치(안 제154조)

- 추계의 전제에 따라 2023년 환경부 지방관서(금강청)의 자연경관심의회 위원의 검토수당(600만원)을 준용하여 추계함
- 개정안에 따라 자연경관심의회 위원의 검토수당은 2025년 600만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3,300만원으로 추계됨

[표 6] 자연경관심의회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자연경관심의회 위원 검토 수당	6	6	7	7	7	3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라. 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안 제172조)

□ (보수) 추계의 전제에 따라 증원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의회는 5급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시·군의회는 6급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채용하고, 2023년 일반임기제 5급·6급 지방직공무원의 연봉액에 공무원임금 평균 상승률을 적용하여 1인당 보수를 추계함

- 일반임기제 지방공무원에 대한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의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성과급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에 따른 연봉하한액의 120%를 적용¹¹⁾하고, 추계기간동안 공무원 임금 평균 상승률에 따라 상승한다고 가정함
 - 2023년 일반임기제 5급 지방직공무원의 연간 봉급은 83,942,400원이고 6급 지방직공무원의 연간 봉급은 68,773,200원임
 - 수당은 특수업무수당¹²⁾(5급 월 80,000원, 6급 월 60,000원) 적용
 - 실비변상은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는 반영하고, 연가보상비 등은 개인차가 있으므로 제외함
 - 특수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는 추계기간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11)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신규임용시 연봉책정) ③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 일반임기제공무원 및 별표 11 제3호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사람의 연봉은 별표 1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20퍼센트(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별표 11 제3호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의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경우 130퍼센트)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책정할 수 있으며, 인력확보에 지장이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도 연봉을 책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봉은 해당 직무의 종류·곤란성 또는 책임도가 유사한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연봉수준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정해야 한다.

12)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의회 사무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할 수 있음

[표 7] 일반임기제 5급 및 6급 지방공무원 보수: 2023년 기준

(단위: 천원)

구분	봉급	수당	실비변상	합 계
일반임기제 5급 지방공무원	76,502	960	6,480	83,942
일반임기제 6급 지방공무원	63,373	720	4,680	68,773

자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기관부담금) 인건비에 연동되는 공무원연금, 건강보험 등 기관부담금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연도별 부담률을 적용하여 추계함¹³⁾

[표 8] 정책지원 전문인력 5급 및 6급 1명 채용에 따른 보수 및 기관부담금: 2025~2029년

(단위: 천원)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5급	보수	85,944	86,965	87,999	89,046	90,107
	기관부담금	11,315	11,524	11,738	11,957	12,173
	소 계	97,259	98,489	99,737	101,003	102,280
6급	보수	70,432	71,277	72,133	73,001	73,168
	기관부담금	9,272	9,445	9,622	9,803	9,825
	소 계	79,704	80,722	81,755	82,804	82,99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기본경비) 정책지원 전문인력 1명 증원에 따른 기본경비는 매년 266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됨

- 2023년 10월 기준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정원은 123명¹⁴⁾이며 기본경비는 약 3억 2,700만원으로 1인당 기본경비는 약 266만원임
 - 기본경비는 추계기간 동안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

□ (자산취득비) 정책지원 전문인력 1명 증원에 따른 자산취득비는 「법안 비용추계에 이용되는 단가 및 기준정보에 관한 연구(2020.6.)에서 산정

13) 공무원 인건비 기관부담금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기관부담금	13.20%	13.35%	13.46%	13.46%	13.46%	13.4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14)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전라북도조례 제5291호, 2023.6.16. 시행) 제66조에 따라 의회사무처의 정원은 123명임

한 정부부처 자산취득비 4,196,924원(2020년 기준)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면 2025년 기준 492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됨

- 추계의 전제에 따라 2025년에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4분의 3까지, 2026년에 지방의회의원 정수까지 2년에 걸쳐 증원하면, 자산취득비는 2025년과 2026년에만 발생함
- 도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2025년 10명, 2026년 10명을 증원하고, 시·군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2025년에 49명, 2026년에 54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가정

[표 9]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에 따른 기본경비 및 자산취득비: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5급	기본경비(A, 천원)	2,660	2,660	2,660	2,660	2,660
	정책지원 전문인력 수(B, 명)	10	20	20	20	20
	소 계(C=A×B, 백만원)	27	53	53	53	53
	자산취득비(D, 천원)	4,920	5,030	5,130	5,230	5,340
	정책지원 전문인력 신규 채용 수(E, 명)	10	10	0	0	0
	소 계(F=D×E, 백만원)	49	50	0	0	0
	합 계(C+F)	76	103	53	53	53
6급	기본경비(a, 천원)	2,660	2,660	2,660	2,660	2,660
	정책지원 전문인력 수(b, 명)	49	103	103	103	103
	소 계(c=a×b, 백만원)	130	274	274	274	274
	자산취득비(d, 천원)	4,920	5,030	5,130	5,230	5,340
	정책지원 전문인력 신규 채용 수(e, 명)	49	54	0	0	0
	소 계(f=d×e, 백만원)	241	272	0	0	0
	합 계(c+f)	371	546	274	274	27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추계기간(2025~2029년) 중 의원 정수까지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증원함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총 487억 9,8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0]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5급	인건비(a, 백만원)	973	1,970	1,995	2,020	2,046	9,004
	기본경비(b)	27	53	53	53	53	239
	자산취득비(c)	49	50	0	0	0	99
	소 계(A=a+b+c)	1,049	2,073	2,048	2,073	2,099	9,342
6급	인건비(d, 백만원)	3,905	8,314	8,421	8,529	8,548	37,717
	기본경비(e)	130	274	274	274	274	952
	자산취득비(f)	241	272	0	0	0	513
	소 계(B=d+e+f)	4,276	8,860	8,695	8,803	8,822	39,456
합 계(A+B)		5,325	10,933	10,743	10,876	10,921	48,79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마. 도의회의원 정수 확대(안 제173조)

□ (도의회의원 수당 등) 도의회의원 정수 1인을 확대하는 경우, 수당 등은 2025년 8억 8,900만원 등 5년동안 43억 3,800만원이 발생함

- 추계의 전제에 따라 도의회의원 정수 확대로 인하여 소요되는 도의회의원에 대한 수당 등의 비용은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기관부담금, 기본경비, 자산취득비를 포함하며, [표11]과 같이 추계됨

[표 11] 도의회의원정수 1인 확대에 따른 비용 추정: 2025~2029년

(단위: 천원)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의정활동비	14,400	14,400	14,400	14,400	14,400
월정수당	39,603	40,131	40,666	41,208	41,757
기관부담금	3,432	3,512	3,594	3,679	3,763
기본경비	26,569	26,829	27,092	27,359	27,629
자산취득비	4,920	0	0	0	0
합 계	88,924	84,872	85,752	86,646	87,54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개정안에 따라 도의회의원 정수를 40인에서 50인으로 확대함에 따라 도의회의원에 대한 수당 등 비용의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8억 8,900만원 등 43억 3,8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2] 도의회의원 정수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의정활동비	144	144	144	144	144	720
월정수당	396	401	407	412	418	2,034
기관부담금	34	35	36	37	38	180
기본경비	266	268	271	274	276	1,355
자산취득비	49	0	0	0	0	49
합 계	889	848	858	867	876	4,33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정책지원 전문인력 비용) 추계의 전제에 따라 도의회의원 1인당 정책지원 전문인력 1명을 두므로 10명을 5급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여 보수, 기관부담금,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등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 2025년에 5명, 2026년에 5명 연차적으로 채용하고, 1인당 지급액은 안 172조에 따른 추계와 동일하다고 가정

[표 13] 정책지원 전문인력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인건비	1인당 인건비(A, 천원)	97,259	98,489	99,737	101,003	102,280
	정책지원 전문인력 수(B, 명)	5	10	10	10	10
	소 계(C=A×B, 백만원)	486	985	997	1,010	1,023
기본 경비	기본경비(D, 천원)	2,660	2,660	2,660	2,660	2,660
	정책지원 전문인력 수(E, 명)	5	10	10	10	10
	소 계(F=D×E, 백만원)	13	27	27	27	27
자산 취득비	자산취득비(G, 천원)	4,920	5,030	5,130	5,230	5,340
	정책지원 전문인력 신규 채용 수(H, 명)	5	10	0	0	0
	소 계(I=G×H, 백만원)	25	50	0	0	0
합 계(C+F+I)		524	1,062	1,024	1,037	1,050

주: 인건비는 보수와 기관부담금을 포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추계기간(2025~2029년) 중 의원 정수까지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증원함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14억 1,3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90억 3,5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4] 도의회의원 정수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도의회의원 수당 등	889	848	858	867	876	4,338
정책지원 전문인력 비용	524	1,062	1,024	1,037	1,050	4,697
합 계	1,413	1,910	1,882	1,904	1,926	9,03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바.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구성·운영(안 제175조)

- 추계의 전제에 따라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둘 경우 운영비로 2025년 9,500만원, 2026년 600만원 등 총 1억 1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함

- 유사사례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2021년 1월 16일부터 2022년 4월 22일까지 활동을 하였고, 2021년 15회, 2022년 4회 등 총 19회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운영비로 2021년 약 8,300만원, 2022년 약 500만원 등 총 8,800만원을 집행함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2025년 15회, 2026년 4회 등 총 19회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운영비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면 2025년 9,500만원, 2026년 600만원 등 총 1억 1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표 15]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구성·운영(안 제175조)	95	6	0	0	0	10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사. 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지원을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70억 9,600만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동안 총 582억 4,6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6]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각종 계획 수립	252	0	0	0	0	252
새만금 농생명융지협이체 운영	5	5	5	6	6	27
자연경관심의회 설치	6	6	7	7	7	33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	5,325	10,933	10,743	10,876	10,921	48,798
도회의의원 정수 확대	1,413	1,910	1,882	1,904	1,926	9,035
도회의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구성·운영	95	6	0	0	0	101
합 계	7,096	12,860	12,637	12,793	12,860	58,24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한예슬	오명희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한예슬	02-6788-4831	yeseulhan@nabo.go.kr